

제1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전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
1	성남시의회의회정 포럼설치및운영 규칙안	□ 제안이유 · 의정발전과 주요시책 및 지역개발을 위한 의정포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 □ 주요골자 · 의회 의정포럼의 구성은 현직 의원을 당연직으로 함(안 제3조제1항) · 원활한 의정포럼 추진을 위하여 대표와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둠(안 제3조제2항) · 대표는 의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간사는 의장이 지명하며, 서기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함(안 제3조제3항) · 의정포럼의 의제는 다음 각호와 같음(안 제4조) 1.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와 대안의 개발 2.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·정책 개발 3.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토론 4.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· 의정포럼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(안 제5조제2항) · 의제에 따른 초청 토론자의 수와 대상은 대표와 간사가 협의하여 정함(안 제5조제3항) · 의장은 의정포럼을 위한 자료 수집비, 의정 포럼 개최비 등을 지원 할 수 있음(안 제6조제1항) · 공무원 및 현직 의원이 아닌 초청 토론 참여자에 대하여는 성남시각중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(안 제6조제2항)	의회사무국	의회운영

제1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
2	성남시지방공사 성남의료원설립및 운영조례안	☐ 제안이유 ·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지방공사 성남의료원설치조례제정 청구가 있어 조례안을 작성 성남시의회에 부의코자 함 ☐ 주요골자 · 의료원의 자본금은 성남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(안 제4조) · 의료원에는 원장 및 이사와 감사를 두며, 이사 감사의수는 정관으로 정하되, 이사의 정수는 11인 이내로 함(안 제7조) · 원장은 시장이 임·면하며,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함(안 제8조) · 원장후보를 추천하기위하여 원장추천위원회를 운영함(안 제15조 내지 제21조) · 의료원의 사업을 규정함(안 제22조) - 진료사업 - 전염병예방 등 공공의 보건의료 사업 - 질병에 관한 임상연구 - 전공의사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-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 -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·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을 규정함(안 제27조) -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이사회결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토록 함 - 결산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,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함 · 의료원의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6조)	기획예산과	자치행정

제1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원회
3	성남시옴부즈만 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	☐ 제안이유 · 주민의 고충민원상담제도 및 통신수단의 발달로 민원상담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본 제도의 효율성이 저조하며 · 2003년 제2차 성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그 실적이 미비(2년간 4건)하다는 지적에 따라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함 ☐ 주요골자 · 동조례 폐지	자치행정과	자치행정
4	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	☐ 제안이유 · “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” 설치 · 운영계획과 관련 외국인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·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책임능력이 있는 사업대상자를 선정 · 위탁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· 위탁 대상시설 - 명 칭 :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- 위 치 : 수정구 태평2동 7288-11번지 - 대지면적 : 1필지 664.7㎡(201평) - 건물면적 : 1동 1,105.54㎡(334평) - 지하1층, 지상2층 - 시설계획 : 사무실1, 인터넷방1, 상담실2, 교육실2, 체력단련장1, 화장실 및 샤워실2, 식당1, 숙직실 등 · 위탁개시예정일 : 2004년 6월 · 위탁기간 : 위 · 수탁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년 기준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· 위탁가능단체 · 법인 :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· 수탁단체 선정 : 사업계획서 및 기타 소정서류등을 제출받아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서를 작성 운영위원회 심의후 위탁대상자 선정	지역경제과	경제환경

제1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
5	성남시문화예술 공간및미술장식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	□ 제안이유 · 현행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상의 불합리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새로이 개정하여 법 적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□ 주요골자 ·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시기 조정(안 제3조) 당해 건축물의 준공예정일로부터 180일 전까지를 → 건축공사착공신고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변경함	문화예술과	사회복지
6	성남시문화재단 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안	□ 제안이유 · 성남 문화예술의 진흥 및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, 청소년육성 활동에 대한 폭넓은 향유와 참여를 지원키 위해 일부 문화시설을 재단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· 「향기있는 문화도시」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 및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발전과 문화창조 역량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함 □ 주요골자 · 재단의 사업범위를 정함(안 제4조) -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하는 시 문화시설의 시설관리 및 운영 - 문화예술의 창작·보급과 조사연구 - 문화예술 및 청소년의 국내·외교류사업 - 청소년수련거리 개발 및 운영 - 문화예술진흥 및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· 재단의 기본재산은 성남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익사업으로 조성하며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에서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 · 재단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함(안 제7조)	문화예술과	사회복지

제1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
7	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	·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이사회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(안 제14조) · 재단은 매 사업연도 세입·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토록 함(안 제15조) ·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) ·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8조) ☐ 제안이유 ·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등의 조기자활을 위하여 “생활보호법”이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”으로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조항 및 일부용어를 개정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· 개정법률에 맞도록 각 조항의 용어를 개정 - “생활보호대상자”를 →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”로 · 1회에 한하여 재임대하도록 하였던 규정을 2회로 완화함(안 제10조)	주 택 과	도시건설
8	성남시시영아파트임대조례중개정조례안	☐ 제안이유 · “주택건설촉진법”이 “주택법”으로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조항 및 일부용어를 개정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· “주택건설촉진법”을 → “주택법”으로	주 택 과	도시건설